

2007. 12. 21 ~ 12. 24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의안번호 제65호>

[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12.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12. 12

2. 제3회 추경예산 규모(군 전체)

가. 총괄 - (사항별설명서 P1)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3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제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계	295,487,999	294,265,160	1,222,839	0.41%
일반회계	248,907,279	247,683,472	1,223,807	0.49
특별회계	46,580,720	46,581,688	△ 968	△0.002

-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2,283만 9천원이(0.41%)증액된 2,954억 8,79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2,489억 72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380만 7천원이(0.49%)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465억 8,0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만 8천원이(0.002%) 감액되었음.

## 나 전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273,341,254	272,199,515	1,141,739	0.4%
지방세수입	14,782,976	12,982,976	1,800,000	13.9
경상적세외수입	6,212,124	6,288,832	△76,708	△1.2
임시적세외수입	28,950,630	28,658,774	291,856	1.0
지방교부세	122,514,490	122,514,490	0	0
조정교부금	4,415,000	4,415,000	0	0
국고보조금	69,640,022	71,775,914	△2,135,892	△3.0
도비보조금	26,826,012	25,563,529	1,262,483	4.9
지방채 (국내차입금 등)	0	0	0	0

○ 2007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4%가 증액된 2,733억 4,125만 4천원으로 편성함

## 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3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총무위원회	128,604,313	128,588,237	16,076	0.01%
의회사무과	885,629	885,629	0	0
기획감사실	14,016,360	14,570,584	△554,224	△3.80
종합민원실	931,626	920,803	10,823	1.17
행 정 과	36,552,920	36,595,872	△42,952	△0.12
재 무 과	2,978,161	2,378,161	600,000	25.22
주민생활지원과	628,255	679,312	△51,057	△7.52
사회복지과	31,144,738	31,046,330	98,408	0.32
문화관광과	19,619,357	19,660,327	△40,970	△0.21
전략사업추진단	7,415,244	7,415,244	0	0
보 건 소	4,741,872	4,740,824	1,048	0.02
교육문화센터	1,638,361	1,638,361	0	0
수송대관리사무소	250,544	250,544	0	0
읍면	7,801,246	7,806,246	△5,000	△0.06

-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01% 증액된 1,286억 43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3. 검토의견

#### ■ 기획감사실(설명서 P59 ~ 64)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14,016,360	14,570,584	△554,224	△3.80%

○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422만 4천원(△3.80%)이 감액된 140억 1,63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획관리 : △46,100천원(설명서 p61)과

◇ 정보화관리 : △273,067천원(설명서 p62) 중

○ 일반보상금 △6,100천원은 시책토론회 참석자 간식제공 및 시책 등 제안자 보상금은 시책토론회 미개최 및 시책제안자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임.

○ 포상금 15,000천원의 증액은 당초 계획대비 수상예상 분야가 10개 분야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임.

○ 사업예산 자체사업인 군정업무 계량화 용역 △15,000천원과 서비스 품질 평가제 시행 △40,000천원, 그리고 정보화관리 자체사업 읍면 홈페이지 구축 △30,000천원, 전산실·통신실 시스템 재배치 및 정비 △15,000천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신중한 사업계획이 필요함.

○ 자산취득비 인터넷 전화기(IP폰) 구입 440,000천원 중

- 노인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에 200,000원을 지출하고 거창읍사무소 인터넷 전화기(IP폰) 구입(72대)비에 40,000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200,000천원을 금번 제3회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임

- 그러나 노인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한 2억원에 대해서는 2007.4.3일 의회 주례회의에서 군립 노인요양병원 개원 시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로 지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
- 의회에 보고는 하였지만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예산의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임.
-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초예산에 편성한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는  
→ 장·관·항이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이고,  
→ 의료장비 구입은 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예산  
의 이용 절차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집행의 제한) 제1항에서 세출  
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보건소의 세출예산 장·관·항

- 장 : 사회개발비
- 관 :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 항 : 보건관리

-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보건소로 재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사업 : 별책

-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은 총 119건에 40,187,814천원임.
  -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 시기미도래, 기본계획 미확정,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연도에 발주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치밀한 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한 사업계획이 필요함

■ 종합민원실(설명서 P65~70)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931,626	920,803	10,823	1.17%

-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2만 3천원(1.17%)이 증액된 9억 3,16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민원실 운영,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22,823천원은 여권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여권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 위생관리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업 등 신고 보상금 △2,000천원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에 부정불량 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 신고보상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임.

■ 행정과(설명서 P71~77)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36,552,920	36,595,872	△42,952	△0.12%

○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95만 2천원(△0.12%)이 감액된 365억 5,29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관리 : 43,201천원(설명서 P73) 중

- 인건비 42,201천원은 국가사무인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의 인건비가 국비예산으로 배정됨에 따라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임.
- 일반보상금 △10,000천원은 도정시책교육 및 토론회 참석 보상금을 지급하기위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정시책 교육 등의 축소 및 선거법상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삭감한 것임.

◇ 공무원단체관리 : △54,153천원(설명서 P76) 중

- 인건비 △313,000천원은 기본급이 예산편성액보다 적게 지출될 것이 예상되어 삭감하고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임.
- 출연금 258,847천원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대여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편성한 것임

◇ 혁신분권 : △20,000천원(설명서 P776)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학술 용역비 △20,000천원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임.

■ 재무과 소관(설명서 P79~8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2,978,161	2,378,161	600,000	25.22%

○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원 (25.22%)이 증액된 29억 7,81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자산관리 : 600,000천원(설명서 p81)

○ (구) 읍청사부지 문화휴식 공간 조성사업비 600,000천원을 금회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연도 말인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

- 그리고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금회 결산추경에 6억원을 예산 편성하고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임.

- 지방재정법의 명시이월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함에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알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구) 읍청사부지 문화휴식 공간 조성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함.

■ 주민생활지원과(설명서 P83~88)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628,255	679,312	△51,057	△7.52%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105만 7천원(△7.52%)이 감액된 6억 2,82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민생활지원 : △51,057천 원(설명서 p85)

- 국고보조사업 수급자 생계급여 △228,301천원의 감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이 과다 배정되어 필요한 경비 외 금액은 삭감하는 것이며, 수급자 난방비 46,948천원은 고유가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면우 광종석 선생 사당 및 묘소정화사업 2억원은 도비보조사업비임.

- ◇ 기타 주요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등이 조정됨에 따른 정리분으로 검토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사회복지과(설명서 P89 ~ 97)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31,144,738	31,046,330	98,408	0.32%

-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840만 8천원(0.32%)이 증액된 311억 4,47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경로복지 : △9,647천원(설명서 p91)은

- 일반보상금 △29,945천원은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별로 지급하는 경로연금의 국도비보조금과 민간이전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2,001천원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20,449천원과 기초노령연금사업 스캐너 구입비 20,499천원은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추경에 편성한 것임.

◇ 장애인 아동 : 107,095천원(설명서 p93) 중

-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운영 △450,000천원은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36 - 5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살롬의 집(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007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관광과(설명서 P99~104)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19,619,357	19,660,327	△40,970	△0.21%

-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97만원(△0.21%)이 감액된 196억 1,93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연수사 주변정비 사업비 50,000천원은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며,
- 탁구단 운영비 △50,000천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삭감과 미사용 경비 및 집행 잔액에 따른 예산 삭감임.
- 기타 경비는 사업 미집행 및 집행 잔액임.

■ 보건소(설명서 P105~110)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2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4,741,872	4,740,824	1,048	0.02%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4만 8천원(0.02%)이 증액된 47억 4,18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보건관리 : 1,048천원(명세서 p107)의

- 주요 증감 사유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예산을 편성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